

品質不良 등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에 관한 仲裁判定事例

梁 善 煥*

目 次

1. 거래 경위
2.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 (2) 피신청인의 항변 요지
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의 중재 판정문
 - (1) 판정 주문
 - (2) 판정 이유의 요지

신청인 : 미국의 A상사

피신청인 : 한국의 B상사

청구내용 : 품질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거래 경위

신청인은 미국내 인형 판매회사이며, 피신청인은 인형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신청인은 미국내 “Unique Copyright Design”이라는 저작권 디자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Hand Puppet를 대량 제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2년 이상의 교섭과정을 거친 후 1990년 6월경 Hand Puppet 19,800개, 대금 미화 58,187불로 하는 FOB부산조건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동년 9월 22일 뉴욕 도착예정의 한진해운의 선박을 통하여 본건 물품의 선적을 마쳤다.

* 成均館大學校 教授

2. 양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신청인은 본 거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계약위반을 하였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선적기일 및 신용장 유효기일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제대로 그 선적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선적되지 않은 제품도 있었으나 전제품을 선적한 것처럼 허위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미선적된 제품을 항공으로 송부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보내주지 않았다.

나. 독립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적된 제품은 피신청인이 본건 거래를 위하여 제시하였던 Counter Sample과는 그 품질이 다른 하자가 있는 불량품이었다.

위와 같은 계약위반과 함께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한 선적비용의 증가와 허위 포장명세서에 따른 추가 관세부담 등으로 인한 미화 95,000불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2) 피신청인의 항변요지

신청인의 주장인 Counter Sample과 일치하지 않는 불량제품의 선적 및 수량부족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권을 부인한다.

가. 신청인은 상법 제69조상의 청구기간(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수입한 후 인정기간내에 본건 제품의 하자정도 및 손해정도와 그 배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사를 보내와야 하는 데도 신청인은 제품수령 후 선적한 제

품의 일부인 5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이 나쁘다는 의사만 보내왔을 뿐 그 제품의 수량, 상태에 관하여 상세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회답을 보내주지 않았다

나. 설사 하자로 인한 계약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방법도 고지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임의로 1년, 2년씩 제품의 40% 가량을 재판매한 것은 신청인 스스로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기각되어야 하며, 설사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배상액은 계약해제에 따른 전보배상액의 한도내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수입한 인형 18,952개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물품대금 미화 58,187불 및 선적비용, 관세비용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반환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수입한 인형 중 7,304개를 임의로 재판매하고 나머지 11,648개만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인형 11,648개를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11,648개에 해당하는 물품대금과 관세 및 선적비용 등을 반환받으면 될 것이다.

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문

중재 제xxx호

신청인 : A (매수인)상사
주 소 : 미합중국

대표이사 :
위대리인 : 성명 : 변호사
주 소 : 대한민국

인
인

피신청인 : B (매도인)상사
주 소 : 대한민국

대표이사 :
위대리인 : 성명 :
주 소 : 대한민국

인
인

(1) 판정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사만삼천팔백팔십팔불(US\$43,888.00) 및 위금원증 미화 삼천구십이불사십구센트(US\$3,092.49)에 대해서는 선적일인 1990. 8. 20.부터 이 중재판정문송달일까지는 연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2할5푼의, 그리고 나머지 미화 사만칠백구십오불오십일센트(US\$40,795.51)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서송달의일부터 이 중재판정문송달일까지는 연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2분하여 그중 1은 신청인이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 판정이유의 요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신청인(매수인)과 피신청인(매도인)은 본인 대 본인의 자격으로 피신청인이 제작하여 제시한 대용견본(Counter Sample)을 기준으로 12종의 플러시 천 수동꼭두각시 완구(plush hand puppets) 40피트 콘테이너 1대 만재분(FCL Cargo)에 상당하는 수량인 19,800개에 대하여 1990년 5월 22일 및 같은 해 6월 15일자로 부산항본선인도조건 미화 58,187불(FOB Pusan)가액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갑제1호증, 을제1호증 및 을제2호증),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수익자로 1990년 6월 30일에 미국 필라델피아(Philadelphia)소재 xxx 은행(xx Bank)을 통하여 신용장금액 미화 58,812불, 분할선적불가, 선적기일 1990년 7월 31일, 유효기일 1990년 8월 15일, 신용장번호 xxxxxx 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그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990년 7월 28일에 신용장 조건중 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을 각각 1990년 8월 20일, 199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변경한 사실(갑제10호증 및 을제5호증).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미국 시애틀(Seattle)경유 1990년 9월 22일 뉴욕 도착예정의 한진해운소속 한진 쟁무호(Hanjin Chungmu V. 73E)선박의 선복을 수배하였으며, 약정품을 선적함에 있어 계약수량보다 848개(FOB가액으로는 미화 2,681불)가 부족한 18,925개(FOB가액으로는 미화 55,506불)만을 선적하였으나 선적서류는 계약수량 전량을 선적한 것으로 작성하여 계약물품대금 미화 58,187불 전액을 화환취결하여 대금을 회수(Nego)한 사실(을제6호증, 을제28호증, 갑제4호증 및 갑제5호증).

다. 피신청인은 1990년 9월 4일자 사진전송장치(Facsimile)에 의한 선적통지(Shipping Advice)에 주문품중 Moose 504개, Raccoon 200개 및 Elk 144개, 도합 848개를 원단구입난으로 부족선적하였음을 통고하였으며, 해당 미선적분은 즉시 피신청인 비용부담으로 항공편으로 송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나(을제6호증) 이후 해당 부족선적분을 추가로 선적한 바 없다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0년 10월 22일에 도착물품의 품질을 검사한 바, 매매의 기준이 된 견본(Counter Sample)의 품질에 미달하는 열등품이 도착되었으며, 박음질의 땀이 느슨하며 너절하고 봉탈이 많으며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

는 등 전체적으로 불량이 없는 불량품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고함과 함께, 그중 특히 Raccoon, Brown Rabbit, White Rabbit, Moose 및 Elk 등 5개품의 품질이 견본(Counter Sample)에 비교하여 원단의 색상이 상이하고 Pile의 기장이 지나치게 길고 동물완구의 입, 귀, 코, 눈등의 위치가 잘못 부착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밖의 품종(7개품)은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품질이 좋은 편도 아니다”는 사실을 통고하면서 아울러 상기 5개품은 판매불가능한 불량품으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통고를 한 사실(갑제4호증).

이어서 신청인은 1990년 10월 23일에 상기 5개품목의 대체품송부를 요청하였으며, 당초 피신청인이 관세면제품이라고 보장한, 그러나 만일 부과된다면 이를 피신청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을제25호증) 수입관세도 6.7%가 부과되는 바 이들 비용을 차기주문시에 철가할 것임을 통고한 사실(갑제8호증).

마. 피신청인은 1990년 10월 23일에 위 5개품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신청인의 지적사실을 시인하고 5개품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적확한 금액을 알려주면 현금송금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나 차기 주문분에서 철가하는 방법으로 보상하겠다는 제의를 한 사실(갑제7호증 및 을제8호증).

바. 1991년 6월 이후 서장에 의한 당사자간의 교신이 끊겼으며 따라서 추가매매계약도 이루어진 바 없었다는 사실.

2. 신청인의 청구요지

약정품 전량을 선적하지도 않았으며, 선적인도된 물품도 도착지에서 콘테이너를 개장하여 검사한 결과 전량이 조악품으로 상품가치가 전무함으로 피신청인은 매매대금 미화58,187불(선적항 본선인도가격 : FOB Pusan)과 당해

불량품 수입에 따른 운송비 및 인도비용 미화4,715불, 미합중국수입관세 4,078불, 수입통관 제비용 미화1,578불, 그리고 공인검정인의 검사비용, 변호사 비용 등 미화6,442불의 실비보상과 미선적 및 미국내에서의 재판매불 가능한 불량품선적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재판매 이익상실 및 신용훼손 등 손해액 미화20,000불, 도합 미화95,000불 및 이에 대하여 1990. 7. 1부터 중재판정 선고일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장.

3. 신청인의 답변요지

가. 미선적품 848개의 매매대금, 해당 국제운송임, 통관제비용에 대해서는 무위 이를 변제할 것이며 기타 선적물품의 제품솜씨(Workmanship)가 견본품(Counter Sample)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저질품이 일부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적품 전량이 재판매불가능한 조악품(bad merchandise)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우기 당초에 5개품에 대해서만 품질불량이라고 통고해 놓고 이제와서 전제품을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락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임의로 선정한 검사인에 의한 검사보고서 갑제19호증도 이를 부인하니 전제품을 반송하여 중재판정부의 입회하에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는 공인국제검정인으로 하여금 재검사하여 불량율을 확인하자는 주장.

나. 갑제15호증의 “관세 등이 부과되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표현은 당시 미합중국에서 플러시 천 수동꼭득각시완구에 무관세가 확실하다는 사실은 정보로서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더구나 1989년 1월 1일부터 1992년 1월 31일까지 미국에서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율제15호증 및 율제16호증), 본원적으로 본계약이 FOB 계약임을 감안할 때

수입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결론적으로 일부 상품을 판매하고 잔여품이 경기부진으로 재고되자 이를 수출상인 피신청인에게 전가시키려는 일종의 마아케트 클레임으로 이를 배격한다는 주장.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은 본건 거래시점에 미합중국에서 25인치 이하의 Plush Hand Puppets에 대하여 무관세품이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갑제12호증에 의하면 미화4,078.91불의 수입세는 통관사[xxx Custom Brokers. Inc.]를 통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유의미의 FOB 계약에서는 수입상이 운송을 수배하고 선적을 지시하면(nomination), 수출상이 이에 약정품을 선적하고 대금을 수령하며 그 이후의 위험 및 비용일체는 이를 수입상이 부담하는 선적지 인도계약이지만 본건 계약은 화환특약 그리고 운송수배 및 수입관세를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 이른바 매도인추가의무부 FOB 계약(Seller's additional duties FOB Contracts)으로 판단된다.

나. 갑제12호증의 통관제비 미화1,598.20불 중 체화료에 해당하는 미화1,093.00불은 물품의 도착시점에서 수입수량검사를 포함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체화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수출입관행상 물품이 도착하면 선사가 운송서류상의 통지선(Notify Party)에게 (본건의 경우 xxx Corp.) 통지하여 물품을 통관수령토록 하는 것이 정기선운송의 예외없는 관행일 뿐만 아니라,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미선적분수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장수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순조로이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건 체화가 불량품검사를 위하여 체화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우기 본건과 같은 컨테이너 1대분의 단위화물(FCL Cargo)은 CFS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화

주에게 인도되는 것이 콘테이너 화물운송의 관행임을 감안할 때, 수입지에서의 체화가 피신청인인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전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1992년 11월 30일자로 된 신청인 본인의 선서진술서 갑제21호증의 1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된 바 신청인은 수령완구 18,925개중 7,304개를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통고도 없이 판매한 것이 분명한데 신청인의 주장은 손해 절감의무이행 및 신청인의 고객유지를 위하여 막대한 수선비를 들여 불량품을 수선하여 아무런 이익을 득함이 없이 저가로 판매하였다고 하나, 수령물품 전량에 대하여 대금반환 및 운임, 관세, 통관제비용 등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전혀 통고함이 없이 그 일부를 판매처분했으므로 해당품 7,304개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매처분한 7,304개에 대하여는 해당 수입관세(미화 1,519.23불 해당)이외의 해당 매매대금, 운임, 인도비, 통관제비 등의 반환은 이를 청구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견본에 의해 이를 품질의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되는 이른바 견본매매(Sales by Sample)의 경우 선적물품의 품질이 승인견본(당사자들은 Counter Sample이라고 통칭함)과 일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섬유제품에 있어서는 인도되는 전 제품이 균일하게 원단, 박음질, 땀 등이 어김없이 견본과 일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우기 섬유원단은 직조 또는 염색 등 펠목단위(lot)별로 약간의 이색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관행이다.

그러나 한개 제품에서 부분마다 lot가 다른 원단을 사용한다거나 원단과 판이하게 다른 색상의 봉사를 쓴다거나 봉탈이 있거나 플러시천 꼭둑각시동 물완구의 귀, 코, 입, 눈 등의 위치가 틀리게 부착되었거나 떨어져 있다면

이들 제품은 중대한 하자품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본제품은 수동꼭득각시 완구라는 특성때문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게 재단 봉제한 것들은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마. 신청인이 송부해 온 하자품을 이건 중재판정부에서 검토한 바, 신청인의 표현처럼(갑제6호증) 전혀 우수한 제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조악한 물품이라고(The other puppets are not as bad, but the quality is not as good as it should be)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총 선적수량중 약40%는 정품으로, 약60%는 부정품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이 임의처분한 7,304개(총선적수량의 약38.5%)완구는 선적품중 품질면에서 수준급의 상품이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바. 한편 신청인은 판매이익손실 및 고객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이 우수한 정상품이 전량 인도되고 재고 없이 전량이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상이 당초 기대했던 대로의 이익을 수출상이 보장할 의무는 없다. 또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 신청인이 미국내에서의 재판매처와 약정품이 수입 인도되기 이전에 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약정품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객상실의 손해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청구분에 대해서도 이를 기각한다. 또한 변호사 비용 등 미화 6,442불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사 선임이 이건 신청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신청과 변호사 선임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재고품을 이건 중재관할지로 반송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대해 공인검정인으로 하여금 재검사토록 하자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건 중재진행중에도 스스로가 지명하고 신청인이 동의하고 당판정부가 승인한 제3의 검정인으로 하여금 미합중국 현지에서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증할 기회가 있었을텐데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 신속성 등 상사중재의 특장을 고려할 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반송, 재검 등을 행하는 것은 절차상 현실적으로 현재 재고품이 미합중국 내국물품으로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고, 또 신청인이 그 저작권을 주장하여 이건 중재가 종료되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때 까지는 반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시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가액에 비하여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건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재고품 11,648개에 대한 대금반환 등이 이루어지면, 현재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고품 11,648개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될 것이며, 신청인도 이 재고품의 반송 및 기타 관세환급 등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이건 중재판정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피신청인은 스스로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재고품을 자유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 살피건대, 이건 중재의 대상이 된 플러시 천 수동 동물완구 전체계약 분 19,800개는 이를 3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당초부터 선적을 하지 않은 848개(4.282%), 둘째 선적분 전량이 재판매 불가한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며 전량보상을 청구하면서도 피신청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신청인이 미국에서 재판매 처분한 7,304개(36.889%), 셋째 현재 재고로 보관중인 11,648개(58.828%)가 그것이다.

이중, 앞에서 설시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① 미선적분 848개의 FOB 매매대금 미화 2,681불(가액

으로는 4.608%), 해당 공운임(dead freight)등 미화 201.90불, 수입관세 미화 187.96불 및 해당 통관제비용 미화 21.63불 이상 합계 미화 3,092.49불 및 ② 불량재고품 11,648개의 매매대금 미화 33,833.62불(가액으로는 58.146%), 해당운임 등 미화 2,773.74불, 해당수입관세 미화 2,371.72불 및 해당 통관제비용 등 미화 297.20불 이상 합계 미화 39,276.28불과 그리고 ③ 신청인이 재판매처분한 7,304개에 해당분으로 계상되는 관세액 미화 1,519.23불을 도합하면 미화 43,888불이 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43,888불 및 동급 액중 미화 3,092.49불에 대하여는 선적일인 90.8.20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미화 40,795.51불에 대하여는 중재신청서 송달의일부터 중재 판정문 송달일까지 각 상사법정 이율인 연6푼, 그리고 미화 43,888불에 대하여는 중재판정문 송달의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율인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위 범위내에서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신청인,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당중재판정부는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993年 月 日

의장 중재인 : 인

기타 중재인 : 인

기타 중재인 : 인